

미국의 2008년 농업법(II)

I. 서

총 15장으로 구성된 ‘2008 농업법’¹⁾은 새로운 법률안을 추가로 하여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었다.²⁾ 4월호에서는 미국의 2008 농업법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제1장 농산품, 제2장 환경보존, 제3장 농업무역과 식량원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글에서는 동법의 제4장~제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2008 농업법의 주요내용

1. 4장 영양(Nutrition)

이 장의 주요내용으로 1) 식량구입정책에 관한 행정처리, 자격조건, 혜택에 관한 규정과 2) 긴급식량지원정책을 위한 재정확대, 3) 학교 급

식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공급을 위한 정책, 4) 기타 영양에 관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동 법안이 제정되면서 식량구입정책(Food Stamp Program: FSP)은 영양공급지원프로그램(SNAP)으로 변경되었다.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식품구입정책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지역 내 식량계획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과 영양상태의 증진을 위한 식량구입정책 관련 예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식량배분, 굶주림 탈피(hunger-free)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영양에 관한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간소화, 연방정부에 식량구입과 관련한 규정 위반시 처벌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농촌신용(Farm Credit)

농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보장받는

각주

- 1) 미국 2008 농업법(식품·보존·에너지법)의 정식 명칭은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으로 함.
- 2) 2008 농업법(P.L. 110-246)으로 채택.

〈 표 1 〉 제 4 장 농산품 주요규정

	2002 농업법	2008 농업법
영양공급지원 프로그램(SN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구입정책(Food Stamp Program: FSP) • FSP 표준공제액을 동결시켰던 1996년 복지개혁법을 부분적으로 바꿈. • 인플레이션 지수를 고려한 최저수입지침(poverty guideline)수준으로 표준공제액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FSP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 • 2009년에 144달러로 최소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 상향조정 • 2010년부터는 증가된 생계비용을 기초로 하여 기존 표준공제액 수정
긴급식량지원정책 (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마다 TEFAP 상품구매를 위해 1억 4000만 달러로 강제적 기금(mandatory fund) 증액 - 상품 보관, 운송, 배분에 소요되는 6,000만 달러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에는 1억 9,000만 달러로 재정확대, 2009년 2억 5,000만 달러로 재정확대, 2010년 이후부터 물가상승 감안하여 책정
헝거프리 공동체보조금 (Hunger-Free Community Gr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식문제를 진단하고, 'Hunger-Free Community'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의 연방정부 할당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식량계획서비스 공급자 및 지방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승인
학교급식 (School Meal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파일럿프로젝트(Whole Grain pilot Projects) • 학교급식계획에 사용하기 위한 곡물구매를 위한 파일럿프로젝트(Pilot Project) 실시 • 학교급식에 적절한 곡물을 선정하기 위해 영양평가 실시 - 국내산 구매(Buy American) • 국내산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을 강화

다. 농장소유자에 대한 융자 및 운영융자의 한도액은 20~30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한다. 융자의 이자율은 대략 1.5~4.0퍼센트 정도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융자에 대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미국농업진흥청(the USDA Farm Service Agency: FSA)은 더 이상 상업적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농가에게 융자나 융자보증을 서주는 연방적 차원의 대부(lender of last resort)의 성격을 지닌다.

(2) 미국농업진흥청

- ① 농업을 시작하는 농가나 사회적으로 소외된(disadvantaged)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미국농업진흥청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 ② 개인농가당 200,000달러에서 300,000달러로 융자지원 상한을 조정하였고,
- ③ 판매자 제정에 의한 농지융자(seller-financed land loans)에 관한 보증정책(the guarantee program)을 확대하고,
- ④ 보전사업을 위한 보존융자보증정책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농업금융시스템(Farm Credit System: FCS)은 민간대출기관으로 농가 혹은 농업관련 무역 종사자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되, 동 기관의 자격조건 및 제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신용보증시스템

최근에 FCS는 대출권한의 범위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농가융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주거공간 및 비농가 사업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은 동 기관의 대출권한의 범위 확장에 반대하였다. FCS의 정부후원형사기업(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 GSE) 규정은 불공정 경쟁이익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2. 6장 농촌지역발전(Rural Development)

농촌지역발전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새로운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1) '농촌(rural)'을 재정의하였는데, 이것은 가구밀도(housing density)를 고려한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미 농림부는 스퀘어 마일당 200단위보다 더 큰 가구밀도를 가진 지역에 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법 제정비를 수행했다. 동 법안에서는 수질 및 폐수처리 용자 및 보조금과 공동체 편의시설 정책에 관한 농촌의 자격기준과 관련된 현행법을 유지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업식량생산품 보조금과 농촌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동 법안은 또한 농촌지

역합작투자정책(Rural Collaborative Investment Program: RCIP)을 새로 규정한다. 농촌경제지역 파트너십(the Rural Economic Area Partnership)과 국가적 차원의 농촌발전파트너십(the National Rural Development Partnership)을 계속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7장 연구개발(Research)

연구개발확대 및 경제지원(Research, Extension and Economics: REE)에 관한 임무에 관해 미 농림부는 연방차원에서 수행하는 농업지역의 연구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state) 차원에서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적 연구, 고등교육 정책(Post-secondary Education Economics) 등을 수행하는 데 일정부분 지원한다.

4. 8장 삼림(Forestry)

산림자원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장(chapter)을 구성하여, 산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유림보호우선권(national private forest conservation priority)

(1) 다양한 가치와 다각적 사용을 위한 산림 조망을 계획 및 관리하고 보존하는, (2) 적절한 산림형태의 보존과 파괴의 위협으로부터 보존을 위한, (3) 사유림으로부터 공공이익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규정한다.

새로운 공동체 산림 정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열린 공간보존지원정책(open space con-

servation grant program for local entities)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긴급삼림복원정책(Emergency Forest Restoration Program)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지원한다.

5. 9장 에너지(Energy)

2002년 농업법에서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능에 관한 규정이 본 법안에서는 ‘에너지(Energy)’로 새로 구성된 장에서 규정한다. (1)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한 농업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2) 재생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채택과 개발위험으로부터의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해, (3) 지원금, 융자, 융자보증(loans gurantee)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6. 10장 원예 및 유기농업(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농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농업시장증진프로그램(Farmer’s Market Promotion Programme)은 생산자 직영판매(direct producer-to-consumer marketing opportunity)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경쟁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약 33십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특용작물경쟁력제고에관한법률(the Specially Crops Competitiveness Act of 2004)에 의해 설립된 특용작물 국고보조금(specialty crops block grant) 지원에 관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

다. 주마다 그 주에서 재배된 특용작물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마케팅 연구 및 증진(marketing research and promotion)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012년까지 207백만 달러의 의무적 자금제공(mandatory funding)을 포함한다. (1) 해충발생탐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의 농림부(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와 협력협정(cooperative agreements)을 체결하기 위하여, (2) 외국의 해충과 질병에 관한 위협인지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threat identification and mitigation program)을 추진하고, (3) 해충의 긴급발생 및 이동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용작물 생산자들을 위해 관리감독에 의한 보증제도(audit based certification systems)를 개발하기 위한 기금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벌떼폐사장애(Colony Collapse Disorder: CCD)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소비 진작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 1) 현행 농업시장증진정책을 2012년까지 연장하여 33백만 달러를 제공하고, 2) 저소득층이 영양이 충분이 공급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 건강한 도시 식량계획 발전센터(a Healthy Urban Food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를 건립하기 위한 5백만 달러의 자금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유기농 채소(organic agriculture)를 재배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및 바이오매스(biomass) 작물 생산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바이오매스지원정책(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을 이행하고, 경쟁적 보조금을 제공한다.

7. 11장 축산(Livestock)

(1) 경쟁과 시장(Competition and Marketing)

최근 축산농업의 구조와 산업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생산과 마케팅은 소수의 거대 경영자에 의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독립적이고, 가족중심의 전통적인 농업방식에 의한 농산품 가격의 변화와 영향, 소비자 경쟁력 및 글로벌 경제력 측면에서의 농산품 가격의 변화와 영향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원론적인 고민에 관한 정부의 역할은 농업시장에 관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감독을 이행하는 것이다. 동 법안에서는 축산에 관한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축산시장을 보다 철저하게 규제하고자 하였다.

(2) 원산지 표시제도

2002 농업법에서 추진된 축산물에 관한 국가 원산지표시제도(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³⁾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해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입장과 원산지표시의 의무화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여, 동 제도의 시행이 두 번이나 연기되기도 하였다.

동 제도는 (1) 미국산 원산지; 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살된 경우, (2) 여러 국가를 거쳐 생산된 경우, (3) 외국에서 도살되기 전 미국으로 수입된 경우, (4) 외국산 원산지표시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3) 낙농산업지원

낙농산업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농민 수입을 기준으로 한 직접지불자격요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8. 12장 농작물보호 및 재해보상(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연방농작물보험정책(the 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은 기상변화에 따른 작물 피해에 관한 불가항력적 위험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다. 그 내용으로 작물피해 보상보험(catastrophic crop insurance coverage)에 관해 해당농가는 관리비(administrative

각주

3) 국가원산지표시제도(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에 관해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입장과 원산지표시의 의무화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여, 동 제도의 시행이 두 번이나 연기되기도 하였다.

fee)의 금액을 인상하였다. 또한, 행정 및 운영 비용에 관해 사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상환비용(reimbursement rates)을 2.3%까지 낮추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9. 13장 농산품 선물옵션(Commodity Futures)

회계연도 2008~2013년까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를 위한 정부지출금(appropriation)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외국화폐에 의한 소매은행업계약(retail financial contract)에 관한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2) 장외교환(off-exchange) 혹은 장외거래파생상품(over the counter derivatives) 계약과 관련하여 CFTC의 사기방지 권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3) 위반사항에 대한 민사상 및 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을 수정하였다.

10. 14장 잡칙(Miscellaneous)

(1) 사회적으로 소외된 혹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는 생산자(Socially Disadvantaged and Limited Resource Producers)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농가 혹은 농장주에게 보조 및 봉사 활동을 제공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2) 농업안보(Agricultural Security)

농업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안보국(the

Office of Homeland Security)을 미농림부 산하기관으로 신설하고, 농산물테러리즘(agroterrorism)과 농산물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에 협조하도록 한다. 또한, 농업 차단방역 커뮤니케이션센터(agricultural biosecurity communication center)를 신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1. 15장 무역 및 세금(Trade and Tax Provision)

(1) 농업재해 추가보조(Supplemental Agricultural Disaster Assistance)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을 1) 농작물피해지불정책(a crop disaster payment program), 2) 가뭄피해 가축농가들을 위한 가축사료정책(a livestock forage program for drought-affected livestock farmers), 3) 자연재해 후에 피해 복구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나무지원정책(a tree assistance program), 4)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가축보호정책(livestock indemnity program), 5) 가축, 꿀벌, 양식어류의 긴급지원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세금조항(tax provisions)

세금삭감에 관해 1) 재정, 2) 농업재해보존기금, 3) 보존, 4) 에너지, 5) 농업, 6) 기타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표 2 〉 2008 농업법의 주요내용

장(title)	내 용
제 1 장 농산물	- 밀, 사료용 곡물, 면, 땅콩, 설탕, 유제품 등의 농작물 보조금 정책
제 2 장 환경보존	-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농지보호 및 자연자원 보호) 규정 - 개선된 운영체제 구축 계획
제 3 장 농업무역 및 식량원조	- 미국의 농산물 수출정책 - 국제식량지원정책 및 WTO 의무이행
제 4 장 영양	- 국내 식량 및 영양과 농산물 분배정책 - 저소득층 가정의 식품구입 중요성을 인식, 식품구입프로그램을 영양공급지원프로그램(SNAP)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적용 - 긴급식량지원프로그램(TEFAP)을 위한 농산물 구매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예산지출에 관한 규정 신설
제 5 장 농가신용	- 연방정부 차원의 농민용자정책 및 용자자격조건에 관한 세부 규정과 기타 정책
제 6 장 농촌지역발전	- 연방과 주간, 혹은 주(states)간 협력을 통한 산업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계획과 이행 및 평가에 관한 계획
제 7 장 연구개발	- 농업 연구 및 개발
제 8 장 삼림	- 임업 및 삼림보호를 위한 농림부의 정책 이행
제 9 장 에너지	- 바이오 에너지 정책 -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조달 정책 -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과 사용자교육정책을 받고자 하는 영세사업가, 농민, 농장주에 대한 지원 정책
제 10 장 원예 및 유기농업	- 과일, 채소, 특산물, 유기농업에 관한 법률 신설
제 11 장 축산	- 육류와 가금류의 마케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행법률 수정반영 - 페스트와 질병예방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신설 - 국가원산지표시제도를 수정적용
제 12 장 농작물 보호 및 재해보상	- 농작물 보험에 관한 법률 신설
제 13 장 농산물 선물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reauthorization과 현행법률 수정반영
제 14 장 잡척	- 한정된 자원보존 정책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기타 농업정책
제 15 장 무역 및 세금 조항	- 농업정책 관련 증액된 지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부담 정책 - 보충적 재해보상정책 - 재난구조신타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 신설

김 나 영

(한국법제연구원 인턴연구원)